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특례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안 제56조의6)

- 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정함.
- 2)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 인하(안 제56조의5제2항 개정)

예술인의 경우 7.1. 시행되는 특고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만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4%로 인하함.

다.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안 제52조제2항 신설)
영세소규모사업주 지원을 위한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에 있어 고소득 위임사업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제공자에게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액이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

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월 보수액의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7조제3항 중 “서면계약”을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2호 중 “한다”를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술인”을 “예술인 및 같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다만, 신용카드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제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하는 제휴업체 모집인은 제외한다.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도로화물운송업과 연관되어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산업활동(배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에 종사하는 사람

12.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료를 받는 강사

1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
비즈니스(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⑤ 제3항제4호에서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업주는 제4항의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최종 신고된 보수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예술인에 대한 월평균보수의 하한액: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
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의 하한액: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 또는 일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
액

제19조의6의 제목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을 “(예술인·노무제

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1
9조의3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
안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19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월
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
한액의 합계액을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
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
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
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
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일
을 말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근로자 또는 예술인”
을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
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월평균보수”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한”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을 “변경 및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의7제8항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항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중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근로자 및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6조의3”을 “영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04조의6제2항”을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근로자”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9조 중 “근로자·예술인이”를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예술인의”를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로, “근로자·예술인은”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을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

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제29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한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지원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을 “(자동계좌이체 등 보험료 경감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48조의2제1항”을 “제48조의2제1항, 제4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4조의2제1호 중 “직장가입자”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료”를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의2 및 제19호의10부터 제19호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 또는 보수액 자료,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9의10.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자료

19의11. 「여신금융전문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록 자료

19의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자료

19의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 관련 신고 자료(전자카드 이용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제56조의5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3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으로, “16으”를 “1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1까지를 각각 제56조의7부터 제56조의12까지로 하고, 제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0호에 따른 사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1호에 따른 사람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하고, 보험가입자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6조의11(종전의 제56조의10)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 항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1)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2)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노무제공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제14호와 제52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또는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10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또는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2) 법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또는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또는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법 제50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적은 경우				
마.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또는 제48조의3제6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 또는 제48조의3제6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생략)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 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② -----법 제48조의2 제8항제2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제공자에게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액이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월보수액의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 ② (생략)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 ----- -----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 ----- -----.

④ (생 략)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에 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3. ----- ----- ----- 예술인 및 같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4.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

<신 설>	로서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 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만, 신용카드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신 설>	
<신 설>	
<신 설>	

<u><신 설></u>	자로서 제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하는 제휴업체 모집인은 제외한다.		론」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 사료를 받는 강사
<u><신 설></u>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 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u><신 설></u>	1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u><신 설></u>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u><신 설></u>	14.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u><신 설></u>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도로화물운송업과 연관되어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산업활동(배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에 종사하는 사람	④ (생 략) ⑤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4호에서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업주는 제4항의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u><신 설></u>	12. 「초·중등 교육과정 총		

<신 설>	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최종 신고된 보수액으로 한다.	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신 설>	----- ----- ----- -----
<신 설>	⑦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술인에 대한 월평균보수의 하한액: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의 하한액: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 또는 일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②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19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⑥ (생 략)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의6(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① ----- ----- ----- ----- ----- 제19조의3제7항제1호-----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4. (생 략) <신 설>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 ----- ----- -----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3. 4. (현행과 같음)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6. (생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② ----- -----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1.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2. -----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신설>	2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신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
1.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신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u>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 4. (생략) 5. <u>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u> 6. <u>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의 변경</u> <신설>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u>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u> <신설>	⑦ -----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u>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u>----- 6. ----- <u>변경 및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u> 7. <u>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u> ⑧ ----- ----- ----- -----. 1. (현행과 같음) 2.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u> ----- ----- 3. <u>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u>	⑨ (생략) 제28조(<u>고용보험료 지원대상</u>)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u>피보험자</u> (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당하는 경우: 제1호의 가목부 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항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u>고용보험료 지원대상</u>) ① ----- ----- ----- -----. -----. 1. ----- ----- ----- ----- 가. ----- ----- ----- ----- ----- <u>피보험자</u> 중 <u>근로자</u>----- -----
---	--	--	--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 -----.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u>근로자·예술인이</u>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u>근로자·예술인의</u> 보수·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 ----- <u>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u> ----- <u>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u> ----- ----- ----- -----.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u>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u>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u>근로자·예술인은</u>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 -----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u> ----- ----- ----- -----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u>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② ----- -----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u>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u>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u>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u> 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 ----- -----. ----- ----- ----- ----- ----- ----- ----- <u>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u> ----- ----- ----- ----- <u>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u> ----- ----- -----.
1. ~ 3. (생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대상이 되는 <u>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u>

<신 설>	<u>협자격 취득신고</u>
③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한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지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등 보험료 경감 금액) ----- ----- <u>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u> ----- ----- ----- ----- ----- ----- -----.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 -- <u>제48조의2제1항, 제48조의3</u>

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u>제1항</u> ----- ----- ----- ----- -----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u>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u>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1. ----- ----- <u>직장가입자</u> · <u>지역가입자</u> -----

2. 「국민연금법」에 따른 <u>사업 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u>	2. ----- <u>사업 장가입자·지역가입자</u> -----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 업자등록 <u>자료</u>	3. ----- ----- <u>자료, 일반과세자 부 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 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 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u>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 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 예정·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 소득·기타소득 <u>지급명세서</u> <u>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 술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자 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 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 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 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 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 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료</u>	15. ----- ----- ----- ----- ----- ----- <u>지급명세서, 사 업장제공사 등의 과세자료 제 출명세서</u>

<u><신 설></u>	<u>15의2. 「법인세법」에 따른 표 준손익계산서 중 보수 또는 보수액 자료, 표준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익 등 보험사무대 행기관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u>
16. ~ 19의9. (생 략) <u><신 설></u>	16. ~ 19의9. (현행과 같음) <u>19의10.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 사 등록 자료</u>
<u><신 설></u>	<u>19의11. 「여신금융전문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용카드회 원모집인 등록 자료</u>
<u><신 설></u>	<u>19의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 모집인 등록 자료</u>
<u><신 설></u>	<u>19의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 관련 신고 자료(전 자카드 이용 신고 자료를 포 함한다)</u>

20. (생략)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신설>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 4. (생략)

<신설>

20. (현행과 같음)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 14-----.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까지-----.

1. ~ 4. (현행과 같음)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0호에 따른 사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1호에 따른 사람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하고, 보험가입자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6조의6 ~ 제56조의9 (생략)	제56조의7 ~ 제56조의10 (현행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9까지와 같음)	
	제56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제56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를 처리할 수 있다. 1. ~ 17의2. (생략) <u><신설></u> 18. ~ 23. (생략) <u>제56조의11</u> (생략)	-----. 1. ~ 17의2. (현행과 같음) <u>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u> <u>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u> <u>에 관한 사항</u> 18. ~ 23.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12</u> (현행 제56조의11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보험기획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연락처	(044) 202 - 7358 (044) 202 - 7163